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4344
----------	------

2025. 10. 1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발의자: 2025. 9. 30.(화) 안영현 의원

나. 회부일: 2025. 9. 30.(화)

다. 상정일: 2025. 10. 16.(목)

-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수정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취지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및 방치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 비용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비용 산정 기준을 별표에 따르도록 규정
(안 제8조의2제3항)
-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비용 구체화, 비용 고지 절차 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신설)

3.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 내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비용 수준의 적정성과 조례 시행 후 대여 사업자와 이용 시민들 간 갈등 유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수정의결(출석위원 7명)

6.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 붙임 1.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344-1
----------	--------

제안년월일 : 2025. 10. 17.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1. 수정 이유

- 조례안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자구 일부 수정

2. 수정 내용

- 안 제8조의2제3항 중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를
“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3항 중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를
“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
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 고지
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 ①·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교통법 시행 령」 제15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 액은 별표에 따른다.</p> <p>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별지서 식의 납부 고지서에 따라 대여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납부의무자가 이용자인 경우 에는 운전자에게 고지할 수 있 다.</p>	<p>제8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도로교통법」 제35 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 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 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 에게 징수하여야 하며---</p> <p>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 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p>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 ①· ② (생 략) 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교통법 시행 령」 제15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u></p> <p>④ <u>제3항의 조치에 따른 소요비 용의 징수는 「광양시 견인자동 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u></p>	<p>제8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교통법」 제35 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 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 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 에게 징수하여야 하며, 그 금액 은 별표에 따른다.</u></p> <p>④ <u>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 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u></p>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주차장(거치대 등 포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6조(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제7조의2(사무의 위탁)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거치대 설치) ①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대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

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④ ~~제3항의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의 징수는 「광양시 견인지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별지서식의 납부 고지서에 따라 대여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납부의무자가 이용자인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 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거치대 등 포함) 확보·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장비의 제공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